장학금지급규정

제 1 장 총 칙

- 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강원관광대학 학칙 제68조에 의거하여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각 종 장학금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개정 08.1.1>
- 제 2 조 (적용범위) 장학생 선발기준과 장학금의 지급은 관련 법령 또는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- 제 3 조 (사무관장) 장학업무 중 예산배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처장이 관장하고 장학생 선발 및 기타 제반 사항은 교학처장이 관장한다.<개정 2010.6.3>

제 2 장 장학위원회

- 제 4 조 (위원회의 설치와 구성) ① 장학금지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 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위원은 교학처장,기획장, 행정지원처장으로 임명하며, 위촉위원은 3인 이내로 구성한다.<개정 2010.6.3>
 - ③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며,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의 임기로 하고 위촉위 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.
 -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당연직으로 장학담당자로 보한다.
- 제 5 조 (심의사항) 위원회의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- ① 장학의 기본 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
 - ② 장학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
 - ③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결정에 관한 사항
 - ④ 기타 장학생의 지도 및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 6 조 (회의) ① 회의는 매학기 개시 1개월 전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

필요로 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3 장 장학금의 종류

- 제 7 조 (장학금의 구분) 장학금은 내부장학금과 외부장학금으로 구분한다.
- 제 8 조 (종류) ① 내부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별첨 1과 같다.
 - ② 외부장학금은 국가기관, 사회단체 및 사기업체 등이나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을 총 칭하며 이는 각 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4 장 장학금 신청

- 제 9 조 (신청자격) 본 대학 학생으로 교내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그 품행이 방정한자 중에서 별첨 1의에 해당하여야 한다.
- 제 10 조 (신청방법) ① 장학금의 지급 신청은 매 학기별로 한다.
 - ②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학과에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장학금의 성격에 따라 구비서류를 생략 또는 추가 할 수 있다.
 - 1. 장학금 신청서
 - 2. 학과장 추천서
 - 3. 성적증명서
 - 4. 재학증명서
 - 5. 보훈대상자 증명서
 - 6. 기타 장학생 선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서류<개정 08.1.1>
- 제 11 조 (신청자격 제한)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당학기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.
 - 1. 신청학기 기간 중 재학 중이 아닌 자
 - 2. 징계중이거나,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
 - 3. 기타 질병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
 - 4. 성적장학금에 한하여 미등록휴학, 재입학, 복학, 편입, 전과 후 한 학기가 지나지

- 아니 한 자
- 5. 시험 부정행위로 처벌된 자
- 6. 기타 학칙위반으로 처벌된 자

제 5 장 장학생 추천

- 제 12 조 (추천 과정) 각 학과장은 지급기준에 따라 학과회의를 거쳐 수혜자를 신정하여 학생지원처에 통보하고 학생지원처는 이를 심의한다. 단, 해당 학과에서 심의하기 곤란한경우에는 이를 학생지원처에 추천하여 심의토록 한다.
- 제 13 조 (추천기준) 학과회의는 장학금 신청자 중에서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는 한 다음의 조건을 고려하여 추천한다.
 - 1. 학업성적
 - 2. 가정형편
 - 3. 장학생수의 학년간 균형 유지
 - 4. 학적 변동 사항
 - 5. 제11조(신청자격제한)
 - 6. 제16조(이중추천 금지)
- 제 14 조 (동점자 처리기준) 성적장학금 추천자 중 동점자에 대하여는 다음 순위를 적용하여 추천한다.
 - 1. 취득(신청)학점수가 많은 자
 - 2. 전공과목의 취득(신청)학점이 많은 자
 - 3. 직전학기 평균평점 우수자
 - 4. 연소자
 - 5. 입학년도가 빠른 자
- 제 15 조 (교체추천) 장학생으로 이미 추천받은 학생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교체하고자 할 경우, 해당 학과장은 사유를 명시하여 교체 추천 할 수 있다.
 - 1. 본 규정 제11조(신청자격 제한)에 해당하는 경우
 - 2. 본인이 포기하였을 경우
 - 3. 삭제<08.1.1>
 - 4. 기타 본 규정에 위반하여 선발된 경우

- 제 16 조 (이중추천금지) 모든 장학금은 동일인에게 이중수혜를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근로장학금, 산업체 위탁교육생의 학비감면은 예외로 한다.
- 제 17 조 (외부장학생 추천) 교외 장학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생의 추천은 다음 각 호 1에 의한다.
 - 1. 학과 및 인원을 지정하여 추천의뢰 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학장의 명의로 추천한다.
 - 2. 수혜자를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.
 - 3. 교외장학금을 학교를 통하여 지급할 때에는 학교에 입금 후 전달한다.
 - 4. 해당 학과 및 인원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외 장학생수의 학과별 균형을 참작하여 교학처장이 선정하여 배정하고 해당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학장 명의로 추천한다.<개정 2010.6.3>

제 6 장 장학금 지급

- 제 18 조 (지급방법)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 납입고지서에 감면금액을 명시하여 잔액을 납입하게 한다.
- 제 19 조 (현금지급 금지) 장학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 20 조 (장학금의 환불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한다.
 - 1. 장학생으로 확정된 학생이 이미 등록을 필하였을 경우
 - 2. 등록기간 후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
- 제 21 조 (지급중지 및 회수)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학비 감면 및 장학금 지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급을 중지하며, 이미 학비감면을 받거나 수령한 장학 금은 회수한다.
 - 1. 본 규정에 위배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판명될 때
 - 2. 장학금의 신청절차 및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때
 - 3. 장학금 지급 대상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<개정 08.1.1>

- 4. 이중수혜자로 확인 된 경우<개정 08.1.1>
- 제 22 조 (지급결정 유효기간) 장학금의 지급결정은 해당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7 장 체육특기장학금

- 제 23 조 (체육특기장학금)
 - ① 본 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 중 대학의 위상정립과 홍보활동에 기여한 자 또는 기여할 수 있는 자로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으로 선발한다.<개정 08.1.1>
 - ② 장학위원회 결의에 의거 장학금은 차등 지급할 수 있다.
 - ③ 삭제<08.1.1>

부 칙

- 제 1 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가 결의하고 학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 2 조 (폐지 규정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사용하던 "장학금 지급 규정"과 동 규정 시행세칙을 폐지한다.
- 제 3 조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시행된 장학금지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.
- 제 4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- 제 2 조 (경과조치) 만학도장학금, 군인자녀장학금, 지역인재육성장학금, 고등학교추천장학금, 간호과우수인재장학금, 외국어우수인재장학금은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- 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
- 제 2 조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시행된 장학금지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<별첨 1 > 내부장학금(종류/지급기준)<개정 09.07.23, 2010.6.3>

 구분		등급	지급기준 (수혜자격)	장학금	비고(세부기준)		
성 저 아 수 정 하 생	신 입 생	전체 수석	A급	대학 입학 시 전체 수석에게 지급	전액	 재학 중 평점4.0이상 시 계속 지급	
		전체 차석	B급	⊙ 대학 입학 시 전체 차석에게 지급	80%	함.	
		학과 수석	C급	● 대학 입학 시 학과수석에게 지급	50%	신입학 학기에 한하여 지급함.	
	재 학 생	1등	A급	● 학과편제정원 1%선발	100만원	* 학과별 편제 정원1 0%범위 내 등급별 차등 지급(※소수점:절상) * 성적(2~3등)장학금지급기준 학과별 직전학기 재학생 30명 이상시 지급 * 시간제 등록생 제외	
		2등	B급	학과편제정원 2%선발	50만원		
		3등	C급	학과편제정원 7%선발	30만원		
만학도장학금				입학일 기준 만35세 이상자	80만원		
	군인자녀장학		A급	10년이상 근속자녀로서 부사관에 입학할 경우	수업료 50%	평점 3.5이상 유지	
正'			B급	10년이상 근속자녀	수업료 30%	평점 3.5이상 유지	
지역인재 육성장학금			하금	당해년도 졸업자 중 태백, 정선, 영월, 삼척 소재 고등학교졸업자 중 전 학년 내신 3등급 이상인자로 고등학교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1명 단, 간호과는 제외	50만원	평점 3.5이상 유지	
고등학교장추천장학금			학금	최근 3년간 등록률 상위 20개교 선정, 당해학 년도 졸업자 중 고등학교별 1인, 전 학년 내 신 3등급이상자를 각 학교장이 추천한 자. 단, 간호과 지원자는 제외	50만원	평점 3.5이상 유지	
간:			A급	수능 4개 영역 중 2개 영역이 2등급이상인자 단, 입학정원의 10%	수업료 전액	평점 3.5이상 유지	
			B급	전 학년 내신 2등급 이상인자	50만원	평점 3.5이상 유지	
의	외국어 우수인재징		학금	TOEIC : 600점, JPT : 600점, JLPT: 2급, HSK: 3급 중 택 1 이상인 자	50만원	입학당시에 한하여 지급	
			A급	⊙ 입상경력 기준 선발, 재적인원의 10%	전액		
	체육특기자 장 학 금		B급	⊙ 입상경력 기준 선발, 재적인원의 5%	80%	〈표1〉참조	
			C급	⊙ 입상경력 기준 선발, 재적인원의 5%	50%		
1	산업체의	위탁	A급	⊙ 교외 산업체 및 군 위탁 교육생	30%	위탁 교육 체결 시 약정한 장학금	
	장 학	己	B급	⊙ 교내 산업체 위탁 교육생	20%	임.	
산업체위탁 격려장학금				위탁 교육 체결 시 약정한 장학금 임			

구분	등급	지급기준 (수혜자격)	장학금	비고(세부기준)	
	A급	● 총학생회장, 대의원의장	전액		
	B급	총학생회부회장	80%	단, 해당임기가 끝나지 않아 자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시 반환, 미 지급함.	
격려장학금	C급	● 대의원 부의장, 총학생회 각 부장	100만원		
	D급	● 총학생회 차장, 각과 학회장, 동아리 연 합회장, 대위원의원포함	50만원		
	E급	⊙ 각 학과 과대표	30만원		
기숙사사생장학금	A급	◉ 기숙사 사생장(남.여)	기숙사 비전액	- 기숙사 장학금 별도 집행	
カキががらられる	В급	⊙ 기숙사 남녀 각 총장(남.여)	기숙사 비50%		
국가유공자 장학	A급		전액	- 평균 점수 70점이상	
	B급	·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적용	50%		
	A급	품행이방정,성실,타의모범,학교발전에기 여 사회봉사활동의 기여도 및 역할	50만원	대학 / 학과추천자 중 선발 -	
공로장학금	В급		30만원		
	C급		20만원		
복지장학금		기초생활수급자 및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	50만원	기초생활수급자(의료급여대상)본인 및 자녀 진폐환자 본인 및 자녀 장애인(4급이상)판정자 본인 및 자녀	
기타장학금		총장의 추천에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		총장이 부의하는 자	
근로장학금	A급	국가근로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	별도책 정	국기근로장학제도에 의하여 선발, 시 행	
	B급	교내(학과) 및 부서에서 업무를 돕는 자	50만원	경제적 곤란 자 추천	
교직원 복지장학	A급	교직원 본인, 자녀, 배우자(입학금 면제)	수업료 전액		
	B급	교직원 형제, 자매, 배우자직계포함(입학금 50% 면제)	수업료 50%		
FAMILY(가족)장학	학금 	학생 본인 및 배우자 직계를 포함하여 2명이 상 동시에 입학 및 재학 중인 자	30만원	해당자중 1명지급	
TUOI하 자하그	A급	우리대학졸업자로 정규 / 정원 외(재)입학한 자	100만원		
재입학 장학금	B급	타 대학졸업자로 정규 / 정원 외(재)입학한자	30만원		

< 표1 > 체육특기자 장학생의 입상경력기준

구 분	입상실적에 따른 선정기준	비고
A급 장학금	1. 전국대회 개인 3위 이내 입상자 2. 전국대회 단체전 1위 입상자	학과장의 추천을 받 아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B급 장학금	1. 전국대회 개인 5위이내 입상자 2. 전국대회 단체전 2위 입상자	
C급 장학금	1. 전국대회 개인 7위이내 입상자 2. 전국대회 단체전 3위 입상자	